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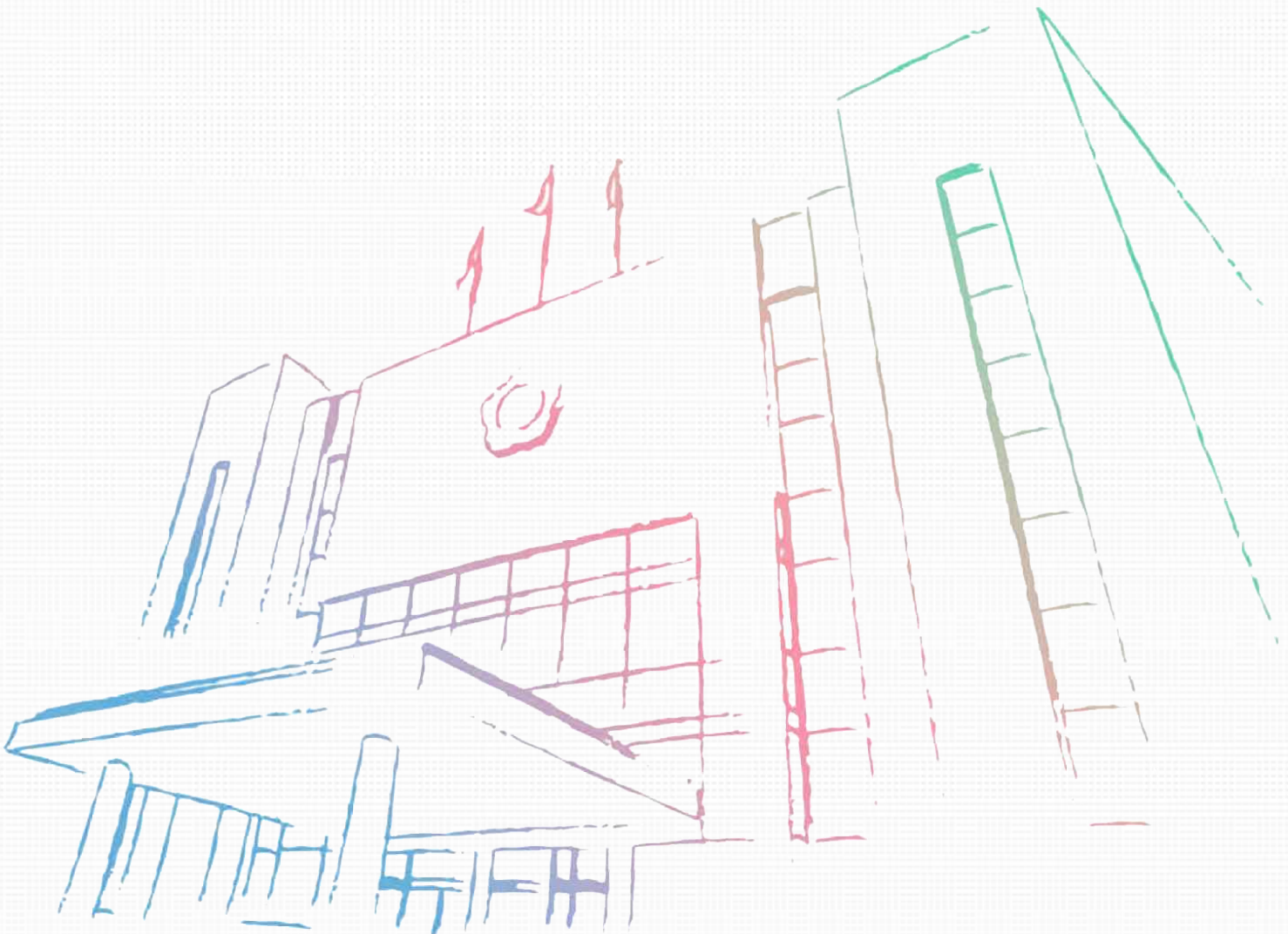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보

2025년 8월





목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개정)	2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7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	9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	11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2.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3.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7
4.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	18
5.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6.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21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광주광역시)	23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경상남도)	27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3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경기도 안성시) … 35

IV 국외 입법례

1.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41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8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728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나노팹센터"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 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장비의 구축·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대부·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 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이송·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제83조의2 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8. 19.] [대통령령 제35709호, 2025. 8.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세무서장 등 행정기관이 매각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는 해당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세무서장 등 행정기관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압류된 석유제품의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57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을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는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를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를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를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28.] [국토교통부령 제1518호, 2025.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공안전의 날 행사로서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및 국제교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중 정비실기교관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군에서의 정비 실무경력을 군 교육기관의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 교육기관 외의 경우에도 인정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18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및 국제교류 등 행사
3. 그 밖에 항공안전 지원과 성숙한 항공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실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2 제9호나목2)가)(3) 중 "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에서의"를 "군에서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I. 다른 사·도 조례 입법동향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8. 13.] [부산광역시조례 제7703호, 2025. 8. 13., 제정]

□ 제정이유

-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오염 저감 및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수소충전소 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수소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을 명시함(안 제3조).
- 다. 수소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을 명시함(안 제4조).
- 라. 충전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수소충전소의 위탁 근거 마련 및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 관계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시·도별 현황

- 부산, 충남, 경남

□ 제정이유

- 치의학산업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 의료기기·소재의 연구개발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임.
- 이에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대구를 치의학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치의학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 나.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연구기반 구축, 공유재산의 사용, 네트워크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집적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함(안 제8조).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시·도별 현황**

-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8. 13.]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799호, 2025. 8. 13., 제정]

□ 제정이유

-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지원하고 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시·도별 현황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5. 8. 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853호, 2025. 8. 8., 제정]

□ 제정이유

-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육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마.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관계법령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시·도별 현황

- 서울, 전북, 충남

□ 제정이유

- 과일산업은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
- 그러나 노동력 부족, 병충해 피해 증가,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생산기반 정비, 품질 고도화, 유통·가공체계 개선, 소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소득 수준 향상, 유통 발달, 디저트 문화 확산 등으로 과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을 중심으로 과일 섭취의 중요성과 공공적 지원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과일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전환, 체험관광 연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지원, 생애주기별 과일간식 제공 등을 포함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과일, 과일산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과일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환, 기반시설 조성, 청년농 지원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ICT·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저장·유통 개선 등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과일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도별 현황

- 경기

6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시행 2025. 8. 1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517호, 2025. 8. 14., 제정]

□ 제정이유

- 시흥 교육 정책 방향 및 지역 환경,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방향 설정 및 전문성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 다. 위탁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수탁기관의 의무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 시·도별 현황

- 경기

III. 지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관련)

[의견25-0146] 광주광역시

□ 질의요지

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임용절차 중 채용시험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이하 “산학겸임교사등”이라 한다)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겸임교사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을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제1호)’,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제2호)’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하는데, 임용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기준', '임용권자', 임용절차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임용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공립학교의 장이나 사립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3. 24. 의견제시 22-0032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임용권자가 해당 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객관적인 능력을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전문성이나 교수(教授) 능력 등이 우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자에게 특혜를 부여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9. 27. 의견제시 24-0267,

법제처 2022. 3. 24. 의견제시 22-0032, 법제처 2012. 11. 13. 의견제시 12-0354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먼저,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공립학교의 장이나 사립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임용권자가 해당 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임용절차 중 채용시험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임용절차를 다르게 적용시키는 경우 그 차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의견25-0196] 경상남도

□ 질의요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나. (질의 가에서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당한 응급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10. 28. 의견제시 24-0358, 법제처 2023. 11. 7. 의견제시 23-0385 참조).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0. 28. 의견제시 24-0358 참조).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응급의료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정 지원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사안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보조금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의 범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의견25-016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3)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 의 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들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의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제22조 각 호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각각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계약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입찰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면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제22조 각 호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반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의 상대방 선정 시 사회적기업에게 우선권을 주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입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우선 구매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제22조 각 호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사회적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제22조 각 호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회적기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공공기관의 장'에 출자·출연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구매 촉진을 위한 권고적·지침적 성격의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9. 9. 14. 의견제시 19-0232, 법제처 2013. 11. 15. 의견제시 13-0334, 법제처 2013. 8. 23. 의견제시 13-0245 참조), 그 구매 촉진 대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제3조제2항), 질의요지와 같이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3. 20. 의견제시 25-0059, 법제처 2018. 10. 1. 의견제시 18-0218 참조).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의견25-0233] 경기도 안성시

□ 질의요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안성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구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제1호),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2호) 및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산업집적법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공장 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내용을 ‘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산업집적법 제8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제1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제4호) 등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장입지 기준고시」(각주: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별표 2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서는 공장입지의 기준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하고(제1항), 이러한 신청이 없더라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전단).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의 지번 및 면적’(제1호),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들은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지역이나 그 제한 및 조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216 해석례 참조).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산업집적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설립 가능 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전제로 해당 기준을 관할 구역의 지번별로 적용한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21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의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구역에 공장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법률의 위임 없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4. 19. 의견제시 12-0117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국외 입법례

*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15호] (2025. 8. 12.)¹⁾

-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가상자산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선도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로 제정되었다. 글로벌 무역·금융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스테이블코인을 고정·연계할 수 있는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미국에 매우 중요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적·지정학적 목표에 따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 금융 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했다.
- 지니어스법은 금융 안정성을 증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요건, 발행인 도산·파산 시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도입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논의하는 중이므로, 최근 미국이 제정한 지니어스법의 규제 체계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 관련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 제 어: 지니어스법(GENIUS Ac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활용 촉진 가상자산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1)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

-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였다.¹⁾
 -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2025년 5월 1일 발의된 후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했고, 7월 18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 이 법률은 '법률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또는 '주요 연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법률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제정하는 날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 중 빨리 도래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 지니어스법은 2025년 상반기 연방의회에 발의된 소위 '디지털자산 3법' 중 하나이다.
 - 지니어스법과 별도로, 하원에서 2025년 5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fy Act of 2025)이, 2025년 3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CBDC 감시국가 금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이 각각 발의된 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하였고, 향후 상원 심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
 -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여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CBDC 감시국가 금지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의 직간접적 CBDC 발행·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각각 목적으로 한다.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²⁾ 예를 들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³⁾

1) 미국 제119대 연방의회 상원법안 제1582호 제정연혁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s/119th-congress/senate-bill/1582?q=%7B%22search%22%3A%22S.+1582%22%7D&s=2&r=1>
 지니어스법의 원문 및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확인 가능

2)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와 교환하여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생성·유통되는 코인이라고 정의한다.
<https://www.fsb.org/work-of-the-fsb/financial-innovation-and-structural-change/crypto-assets-and-global-stablecoins/>

3) World Economic Forum, "Stablecoin surge: Here's why reserve-backed cryptocurrencies are on the rise", Centre for Financial and Monetary
 ...

-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경제의 금융 활동과 연결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변동성이 큰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다.
- ④ 그러나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며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⑤ 지니어스법은 아래 5가지 중장기적 측면에서 신속히 제정되었다.⁴⁾
- **금융 포용성 확대:** 미국 국내외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금융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며, 디지털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여 기존 은행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결제·거래 등의 금융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다.
 - **효율성 증대:** 기존 은행시스템에 비해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국경을 넘은 금융 활동에서 결제 시간과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 **혁신성 장려:** 규제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모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
 - **글로벌 지배력 유지:** 미국 달러화에 스테이블코인을 고정하여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영역에서도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중심점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지정학적 금융 패권 확보:** 규제 체계를 주도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등 다른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장려하여 다른 국가의 활동에 대응하고 전략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권을 확보할 수 있다.

4)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s GENIUS Act into Law", 미국 백악관 2025년 7월 18일자 보도자료 참고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igns-genius-act-into-law/>

지니어스법의 구성

- 지니어스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은 연방 또는 주(州)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았다.
 - 연방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관계부처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그 특징과 용도에 따라 규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금융범죄단속반, 증권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지침 또는 결정을 따랐다.
 - 주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송금업 규칙'(Money Transmitter Rules)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주는 해당 송금업 규칙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또는 취급거래소를 규율하고 있다.⁵⁾
- 이러한 기존 법체계와 별도로, 연방 차원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니어스법이 제정되었다.
 - 이 법률의 주된 목적은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사전 및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다.
 - 지니어스법의 규제 대상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되고, 결제용이 아닌 수익 창출용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⁶⁾
 - 일차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체계로 더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엄격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 주(州)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 오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므로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관련된 행위를 광범위하게 사전·사후에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포괄적이다.

5) 일례로 뉴욕주는 2014년에 최초로 '비트라이선스 규칙'(BitLicense Regulations)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가상통화가 포함된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관계 당국의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준비금 등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체 송금업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 「디지털금융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을 제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다.

6) 수익 창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준비금이나 프로토콜 활동(protocol activitie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획득할 수 있으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 지니어스법은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표는 각 조항 및 그 소제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지니어스법의 구성
제1조	법명 약칭
제2조	정의
제3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취급
제4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제5조	보험예금기관 자회사 및 연방정부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승인
제6조	연방정부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보험예금기관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집행
제7조	주정부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제8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호
제9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혁신
제10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담보물 보관
제11조	도산 절차에서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취급
제12조	상호운용성 표준
제13조	규칙 제정
제14조	비결제 스테이블코인 조사
제15조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16조	은행기관의 권한
제17조	적용범위 ⁷⁾
제18조	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예외 및 외국 관할지역 발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제19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개
제20조	발효일

지니어스법의 주요 내용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사용을 위해 고안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다. 미국 달러화 등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
- 국가통화(national currency), 예금(deposit), 증권(security)은 디지털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⁷⁾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고, 인가된 발행인은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2.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 오직 인가받은 발행인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사전 인가제도를 확립하였다. 미국에 설립된 아래 3가지 유형의 기관만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예금기관 또는 신용조합(credit union)의 자회사: 보험에 가입한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자회사로서 연방 은행규제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연방정부 적격 발행인: 연방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기관(nonbank entity)⁸⁾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은행과 외국은행의 연방 지점도 포함된다.
 - 주정부 적격 발행인: 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정부 규제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은행, 외국은행의 연방 지점, 보험에 가입한 예금기관, 그리고 이러한 각 기관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⁹⁾
- 해당 외국 기관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하려면 연방 통화감독청이 인가한 미국 내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감독 및 연방 통화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미국 발행인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외국 발행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 핀테크 산업을 위한 혁신성보다 금융 체계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부과되는 주요 의무사항은 아래 5가지이다.
 - 준비금 요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잔액을 담보하는 준비금을 최소 1대 1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미국 통화, 미국 단기 국채 등)을 준비하여 항상 전액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자·수익 지급 금지: 지니어스법은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 지급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8) 비은행 기관이란 예금기관 또는 그 자회사가 아닌 기관을 의미한다.

9) 해당 주정부 제도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연방제도에 실질적으로 밀접하다(substantially similar)고 증명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투명성 확보 의무:** 매월 공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재무자료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회계감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률 준수:** 결제업무를 하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¹⁰⁾ 및 「은행비밀유지법」(Bank Secrecy Act)¹¹⁾에 따라 고객신원 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발행인에 대한 도산 또는 파산 절차에서, 준비금 자산은 해당 보유자에 우선 상환해야 한다.

4.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

-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주정부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미화 100억 달러 이하 발행인은 해당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이중 규제를, 미화 100억 달러 초과 발행인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규제 체계에 따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나, 해당 주정부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약

- 미국은 최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결제·거래에 관한 금융 활동을 주도하고자 한다.
 -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인가제도를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시장에 도입하여, 해당 발행인을 사전 및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발행인 인가 요건, 준비금 및 투명성 요건, 이자·수익 지급 금지, 발행인 도산·파산 시 보유자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10) 불법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1) 금융기관이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금세탁 및 기타 금융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일제문(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2025.3.5.

1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211784, 제안일자: 2025.07.2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211777, 제안일자: 2025.07.28.),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의안번호: 2210736, 제안일자: 2025.06.11.)

- ④ 지니어스법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지니어스법의 세부 사항	
구분	내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 결제·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사용을 위해 고안되고,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함.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 연방이 인가한 은행, 연방 통화감독청이 인가한 비은행기관, 연방 재무부가 인가한 주정부 관할의 발행인에게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허용함. · 총 발행 잔액 100억 달러 초과 시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 대상임. · 외국의 적격한 발행인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나, 미국 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발행을 허용함.
준비금 요건	· 고유동성 자산(현금, 미국 단기 국채 등)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고, 준비금은 항상 전액 상환 가능해야 함.
이자 지급 금지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수익 지급은 금지됨.
투명성 요건	· 발행인에 대하여 월별 보고, 피감사, 자금세탁방지 및 은행비밀유지 관련 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도산·파산 시 보호	· 발행인 도산·파산 시, 보유자의 우선 상환권을 보장함.

- ④ 우리나라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는 포괄적인 실정법을 두고 있지 않다.¹²⁾

- 우리의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에 관한 1단계 법률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가상자산 중 특히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증대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을 위한 가상자산에 관한 2단계 법률을 제정하고자 세부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 ④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정비하여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최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¹³⁾ 이에 발맞추어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175